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 내규

-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학원의 성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공정성) ① 담당교수는 성적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성적처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의제기 등 결과분석과 그 결과의 반영은 물론,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조치를 지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 3 조 (평가) ① 학업성적은 출석, 참여,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담당교수는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의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을 채택하고 반영비율을 정한다. 다만, 출석점수는 10% 이상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평가요소와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담당교수는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목적과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교과목 운영 종료 시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조 (시험) ① 정규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시행한다. 단, 변호사자격시험 과목 이외의 교과목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시험을 생략하고 학기말에 종합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중은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시험을 행하거나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시험의 실시 여부와 대체, 결석으로 인한 학점미부여 등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 제 5 조 (시험의 방식) ① 시험의 답안지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채점자가 답안지의 성명 부분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험공동관리제를 적용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강의내용과 진도를 표준화하고, 공동의 성적처리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며, 2인 이상의 교수가 공동의 출제와 평가를 행한다. 출제 및 평가에는 대학원의 소속이 아닌 외부의 교수와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험공동관리제는 다음 교과에 적용한다.
 1. 분반이 이루어지는 교과. 단, 지도학점과 실습교과는 제외한다.
 2. 변호사 자격시험 교과
 3.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교과
- 제 6 조 (시험의 감독) ① 시험의 감독은 담당교수가 조교와 학사지원부의 지원을 받아 행한다.
 ② 시험감독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하면서도 공명정대하게 행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감독자는 해당학생에게 알리는 한편 증거를 수합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이 혐의를 부정하고 시험을 치를 것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하고, 사후 조사 및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시험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정행위자를 즉각 퇴실조치할 수 있다.
- 제 7 조 (참여, 예습, 복습, 과제 등의 평가) ① 참여, 예습, 복습, 과제 등을 평가의 요소로 삼은 경우, 강의담당교수는 강의실수업 또는 수업시간 외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EKU) 등의 이-러닝을 통하여 이를 부과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교수학습 보조수단을 이용한 교수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교의 교수학습개발원 또는 법학연구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영매뉴얼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평가에 따른 학점의 부여) 대학원시행세칙 23조에 의한 성적평가에서 모든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적용하며,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실무과목의 성적 부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 PF로 처리할 수 있다.

1. A⁺, A : 0 ~ 30 %

2. B⁺, B : 0 ~ 80 %

3. C⁺, C, D⁺, D, F : 20% 이상

제 9 조 (평가방식의 고지 및 보안준수) ① 평가방식은 각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수강인원 증감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교수는 대학원장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평가 및 성적을 부여하는 교수는 성적처리 결과가 공표 전에는 최종 평가에 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재수강) ① 어느 교과목의 학점이 C⁺ 이하인 경우에는 본 대학원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총 재수강 학점 수는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재수강에 대한 학점 부여는 A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재수강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이수할 경우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1조 (재시험과 재강의) ① 교과목의 강의교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 최종 성적 처리 전까지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특정 교과목에 대해 재강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 강의교수의 요청에 의해 재강의를 할 수 있다.

③ 재강의는 방학 중에 시행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④ 재강의에 의한 성적평가 및 학점 부여는 정규학기의 교과목에 준한다.

제 12조 (성적에 대한 이의) ① 학생은 최종 성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의제기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지된 소정의 기간 내에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 서면(별지 양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평가, 합산 등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하였거나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학칙에 의해 성적 처리상 출석, 시험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과실 없이 반영하지 못한 경우

② 학사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담당교수에게 부분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명백하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의제기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각하할 수 있다.

③ 현저하게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자에게 경고나 학점상의 불이익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학사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담당교수의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 한 후 담당교수와 이의제기자에게 2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전문과정 진입시험) ① 법학 기초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전문과정에 진입할 자격

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1학년 2학기 말에 헌법, 민법, 형법 과목에 대하여 전문 과정 진입시험을 실시한다.

② 위 시험은 해당 과목 교수들이 1학년 전체 범위에서 과목별로 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며, 변호사자격시험에 준하는 시험관리를 행한다. 출제와 채점에는 외부교수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 시험의 결과는 해당 과목의 2학기 학점을 부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진급, 유급, 과락의 심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 14조 (졸업시험) ① 법학전문석사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졸업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말에 다음 과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필수과목 : 공법(헌법 및 행정법 통합)

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통합)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

2. 선택과목 : 가족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금융법, 노동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단, 이 중 1과목 또는 2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전문 과정 또는 특성화 과정의 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졸업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 총 6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졸업시험은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전체 범위에서 과목별로 공동출제하고, 공동채점하며, 변호사자격시험에 준하는 시험관리를 행한다. 출제와 채점에는 외부교수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 15조 (핵심교양과목 학점 인정) ① 본 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학부의 핵심교양과목(매학기 지정)을 이수한 때에는 이를 본 대학원의 일반교양 선택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학점 인정은 학부의 3학점이 아닌 2학점으로 전환하여 성적 처리한다. 다만 총이수 학점은 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조 (외국어 강의 등) 외국어 강의, 첨단교수학습법을 활용한 강의, 팀티칭 강의 등 교과목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성적처리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교수는 학사운영위원회에 합리적인 대체방안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7조 (실무과목) 실무과목에 대한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18조 (준용규정) 성적의 열람, 확인절차 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본교 규정 및 본 대학원 시행세칙과 학사운영규정 등에 의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시행된 성적처리지침은 이 내규의 시행으로 폐기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0조(재수강 및 학점변경), 제12조 성적의 의신청서 별첨 양식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